

〈記錄〉

서울法大「貴重文書室」의 開設經緯

崔鍾庫*

I

1993년 3월 2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서울대학교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3년여에 걸친 공사끝에 法學研究館을 개관하였다. 서울 法大는 東崇洞 캠퍼스에서 1975년 서울 대학교 종합화계획에 따라 冠岳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0棟에 있다가 1983년에 현재의 15棟을 지어 이전하여왔다. 그러나 15棟에 막상 이전하여 와서보니 3層에 環境大學院이 들어와 공간적으로 더욱 여유없는 형편임을 알게되었다. 특히 自然科學에 속하는 異質학문과 한 건물에 있으니 불편한 점들이 생기고, 교수들은 새로 건물을 지어 연구실을 옮기지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裴載湜學長은 마침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案이 추진중이니 이에 法大 法學研究棟을 신축해야한다는 案을 성공하였다. 本部에서 3년간에 걸쳐 成案하여 발간한 서울대학교 長期發展計劃圖에 보면 法學研究棟은 현재의 15棟과 菊山法學圖書館을 연결하며 짓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1989년 法大 教授議會에서 신축건물의 위치에 대해 논의한 결과 法學도서관 뒤에 있는 空間은 언젠가 法大에서 또 필요한 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법학연구동을 반대편(현 위치)에 짓는 것이 좋을 것이라 결론지었다. 이렇게하여 지금의 위치에 法學研究棟이 서게 되었는데, 1990년 4월 4일 李壽成學長 때에 起工式을 가졌다. 설계에는 환경대학원의 金起浩교수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건물구조가 현대식으로 ㄱ字型으로 들어지는 것은 金교수의 아이디어이다. (개관식때 金교수에게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교수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1991년에 朴秉濠學長으로 바뀌어 경제기획원과 교섭하여 1년에 7억원의 공사비를 확보하는 등 工事は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 무렵 바로 옆에 社會科學大學의 건물이 크게 착공되었는데,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여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본부에서도 法大工事を 우선적으로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다른 대학들에서는 法大를 은근히 선망, 시기하는 눈치도 보였다. 工事は 1992년 10월말에 준공되었고, 건물앞에 造景工事도 다 끝났다. 붉은 벽돌 건물로 크지는 않지만 현대적으로 아담하고 진중한 맛이 나는 법학연구동이 서자 法大는 공간적으로 훨씬 아늑하고 입체성이 생기는 것이 실감되었다. 연면적이 3797M²(1148평), 건축면적 974M²(295평)이고,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높이는 17.2M, 건물길이는 54M이다. 총공사비는 12억6천7백만원이 들었고, 공사는 동우건축(대표: 강구철)이 맡았다.

II

1993년 3월 20일 거행된 개관식 광경은 좀 적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날짜를 이 날로 잡은 것은 이날 개관기념으로 국제심포지움까지 계획하였기 때문에 학기시작 후 다소 여유를 갖고 준비를 하기위해서였다. 1992년 12월에 필자가 北京에서 中國人民大學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움(「헌법과 민족주의」)에 참석하여 人民大學法大學長이요 中國法制史學會長인 曾憲義교수를 개관식에 초청하려고 교섭하면서 날짜를 타정해보니 3월 20일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정하였던 것이다. 아나니 다들까 막상 진행을 해보니 20일까지도 빠듯하게 바빴다. 「개관식 및 국제심포지움」 초청장과 팸플릿을 신경써서 잘 만들어 600여 人士에게 보냈다. 이런 고급스런(?) 팸플릿도 法大에서는 만든 일이 없지만, 뒤에 얘기하는 바와 같이 귀중문서실을 만들고 나면 法大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가 역사적 문서로 이곳에 보관 전이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만들고 싶었다. [이 팸플릿과 이번행사에 관한 一切 문서는 물론 귀중문서실에 一件으로 보관시켰

다.] 3월 20일 날씨도 좋고 동창회 인사와 본부의 김종운총장 이하 각 대학학장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여 개관식을 잘 거행하였다. 그동안 본 건물의 내부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억여만원의 모금을 해준 법대동창회의 금진호회장과 이상혁사무처장, 1천만원을 회사한 SBS 윤세영사장, 3백만원을 회사한 玄在賢 동양그룹회장 등 8인의 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동창회에서는 모금자들의 명단을 박은 銅板을 해와서 현판식도 곁들였다. 이 건물을 공식적으로 「법학연구동」이라 하지 아니하고 「법학연구관」이라 하자고 筆者(교무담당학장보)가 주장하여 徐元字학장도 동의하였는데, 개관식 사회를 맡은 筆者는 본부측에서는 國庫예산으로 지은 건물을 法大에서 너무 독점하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어 여러모로 표현에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어쨌든 이 건물로 법대교수들의 연구실이 모두 옮겨지고 자료실과 참고도서실, 그리고 뒤에 상론할 귀중문서실까지 확보되었으니 法大로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여기서 연구실의 배치에 대하여 좀 적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법학연구관은 4층 건물인데 1층은 대학원생 강의실과 세미나실로 하고 2,3,4층에 34개의 연구실이 있다. 현재 31분명의 교수들을 어떻게 연구실 배정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였는데, 교무담당학장보로서 뭔가 案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여 생각해보니 法學의 公·私·社會法으로 3분체제와 대충나뉘보니 기초법과 社會法을 묶으면 다행히 10~12명으로 均分되었다. 그래서 어느 교수회의 席上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누고, 교수들의 취향에 따라 높은 곳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적게 걷는 낮은 곳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나 대체로 公法을 2층, 私法을 4층으로 하여 중간 3층에 기초·사회법을 연결고리로 두는 것이 좋지않겠느냐고 하니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정식으로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고도 구체적으로 몇 층 몇 호실을 누구 연구실로 정하는 일은 다소 민감티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일로 미루어두고 있었다. 그런데 학생담당학장보인 胡文赫교수가 연구실배치도를 만들어 徐학장께 드렸다고 해서 다소 놀랐다. 학장실에 가서보니 정말 교수회의에서 얘기한 방침대로 각 층에 들어갈 전공별 교수카테고리를 정해놓았다. 대체로 무난하다 생각했지만 공간활용위원회를 거

쳐 교수회의에서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 우선 공간활용위원회 (위원장: 배재식)를 소집하였다.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으나 대체로 胡교수가 만든 案이 좋겠다고 교수회의에 상정하자고 합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2층 公法, 3층 기초·사회법, 4층 私法으로 하되 각 층에서는 元老順으로 優先 선택권을 주기로 하자는 원칙이다. 며칠 후 교수회의에 상정하자 의외로 공법교수 몇 분이 반대를 하여 자칫하면 전공별 싸움(?)이 될 것같은 기미도 보였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고 해서 原案이 통과 되었다. 2층이 통로가 되어 다소 시끄러울 것 같다고 우려해서 였지만, 일단 원칙이 정해지고 나니 층마다 원로순으로 연구실들을 선택하여 순조롭게 잘 끝났다. 여기에 이런 얘기를 적는 것은 교수들에게는 연구실의 배치가 직접적으로 매우 관심있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실무를 맡은 필자로서는 이 문제가 끝나니 太山을 한 고비 넘긴 것같이 느껴졌다. 필자로서 연구실과 관련하여 한 가지 되새겨지는 것은 法大 初期史를 정리하면서 京城帝大 연구실을 文理大와 싸워서 차지하던 시절의 얘기를 알고 있는지라 은근히 더욱 신경이 쓰여졌다고 하겠다. (자세히는 줄고, 서울法大의 初期史, 「法學」 34권 2호, 1993) 어쨌든 이렇게 하여 각 층별로 전공에 따라 연구실들이 배치되었고, 3층이 기초·사회법이 되고 3층 우측에 귀중문서실이 위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잘 어울리게 되었다. 물론 설계 당시에 귀중문서실을 만들자는 주장을 강력히 한 筆者도 3층에 그것이 위치하게 될 것인지, 전공별 연구실 배치와 연결이 될지에 대하여는 예측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III

개관식은 11시에 시작하여 11시 40분에 끝나고, 테이프를 끊고 새 건물의 내부시설을 소개하였다. 새 연구실들을 보고 좋다고들 하였고, 자료실의 공간이 넓다고들 지적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깊게 보는 곳이 역시 귀중문서실이었는데, 김종운 총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귀중문서실에 전시된 물품들을 하나

하나 열심히 보고 언제 이렇게 모았느냐고 신기해 하였다. 역시 법대는 역사가 깊은 대학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하였다. 좋은 아이디어였다면서 나를 격려해 주는 몇 분도 계셨다. 나는 이 말 한마디에 피곤이 일순간에 가시는 것같이 기뻐다. ‘성공했구나!’ 싶었다. 이렇게 내가 걱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다소 흥분해 있었던 것은 이날까지의 경과 과정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실인즉 귀중문서실에 들어갈 전시대와 책장을 卍一인가 하는 가구회사에다 주문하였는데, 제날짜에 납품을 해 주지 못해 신경이 곤두세워졌다. 하는 수 없이 그와 비슷한 기성품이라도 들여 놓아 잠정적으로나마 전시를 하고 다시 빼어내어 제 물품으로 들여오기로 했다. 그런데도 책장은 기성품으로 6대를 들여다 놓았지만, 늦어도 그 전날까지는 들어와야할 전시회가 끝내 도착하지 아니하였다. 전화로 회사에 독촉을 해보니 오후 2시에 신고 떠났다는데, 퇴근 시간을 지나 밤 9시가 되어도 도착하지를 아니했다. 내일 개관식에 귀중문서실을 열 수 없다면 낭패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안절부절할 수 밖에 없었다. 집에 와서 밤에 학교로 알아보니 밤 11시 반에 도착하여 12시 반에 설치를 해 놓고 돌아갔다 한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새벽 4시에 집을 나서서 학교로 나갔다. 그 동안 내 연구실에서 틈틈히 정리해 놓았던 귀중문서들을 혼자 귀중문서실로 옮겨 전시대에 속에 전시하였다. 전시대가 너무 폭이 좁고 투박한 나무로 짜서 도자기 전시용으로는 맞지만 문서전시대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 남기고 철회 시키리라 생각하고 혼자서 허리가 아픈 것을 참으며 6대의 전시대에 채워넣었다. 법학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서 상당수의 책들을 대여해 오기도 했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전시회에 전시하기에는 어중간해서 그만 두었다. 어쨌든 전시대 안에다 법관양성소 시절의 교수시절에서부터 교과서, 京城帝大시절, 서울法大 초창기의 각종 문서들을 전시해 놓고 보니 그럴듯 했다. 집념이 빛을 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니 혼자 꼬박 3시간 가량 아침작업을 해도 피곤한 줄 몰랐다. 11시부터는 개관식 사회를 맡았으므로 새 양복을 빼입고 캐캐묵은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으니 뭘지 우스운 생각도 들었다. 약 반시간 가량 귀중문서실에서 관람을 한 방문객들은 서서히 내려가 리셉션장에서 오찬을 겸한 식

사를 하였다. 사람들은 집에 있는 문서중에 기증할만한 것을 찾아보겠노라고 하는 분도 있었다. 동창들 중에 상당한 반응이 오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오후 1시 반부터는 개관기념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국제화 시대에서의 아시아법학 교육」(Asian Legal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이란 주제도 내가 정하고, 강사교섭까지도 맡았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아니하였다. 이번에 초청된 연사로는 시애틀의 워싱턴대학 헤일리(John Haley)교수와 중국 인민대학 曾憲義 교수, 일본 東京대학 이시이 시로(石井紫郎)교수인데, 두 동양학자는 모두 法制史家이어서 공교롭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분다 비중있는 학자이고 自國의 법학교육에 권위있는 발언을 할 분들로 강사 선정은 잘 했다고 느껴졌다. 曾교수의 통역을 위해 함께 온 韓大元박사(人民大 법학연구소 부소장)도 잘 해주어서 많은 교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아시아法文化와 아시아法學도 이제 3국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해나가야할 일들이 많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法史學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한·중·일 공동저술로 「아시아法思想史」를 3국에서 각국어로 동시에 출판하자는 약속도 하였다. 어쨌든 이런 세계적 학자들이 개관식날 귀중문서실을 관람하였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曾교수는 개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에서부터 자수벽걸이를 선물로 가져왔고, 귀중문서실에다 기념휘호로 「法苑」이라고 두글자를 써 놓고 가셨다. 이 귀중문서실의 개설을 위해 朴秉濠교수도 「道古稽今」이라는 휘호를 써 주셔서 액자포구를 하여 걸었다. 그리고 崔基元교수도 연구실에 갖고 있던 李憲琦라는 사람의 文科及弟 教旨를 하나 주셔서 액자를 해서 걸었다. 연구실 이전시에 박병호 교수가 사용해 온 책상을 옮겨다 놓았는데, 이것은 해방후 부터 鄭光鉉 교수께서 사용하시다 물려받은 것이라 한다. 하버드 로스쿨의 귀중문서실(Treasure Room)에 홈즈(Oliver W. Holmes)가 사용하던 책상과 의자가 보관되어 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책상도 영구히 보존되어 수십년 내려가면 얼마나 값진 것이 될 것인가. 또 배재식교수 연구실에서 50년대부터 사용해 온 옷걸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은 볼 수도 없이 투박하고 커다란 것이 과히 명물이다. 영구보관 할 터이니 달라고 했더니 배교수께서 좋은 아이다

어라고 하시며 기꺼이 주셨다. 이처럼 귀중문서실은 다소 박물관적인 성격도 될 수 있는데, 좀 더 진귀한 물품을 인상적인 것들로 얼마쯤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IV

「귀중문서실」이라면 도서관(Library)과는 다른 일종의 文書庫(Archive)인데, 무슨 문서를 보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사실 공식적으로 한다면 法大에서 나오는 文書를 얼마의 범위에서 얼마동안 보관한다는 등의 원칙을 정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이 문서실을 개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그런 것을 깊이 관심둔 교수도 없고 꼭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새 법학연구관에 공간의 여유가 생기니 法大 100년의 역사도 다가오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기위해 방을 하나 확보한 것이라 하겠다. 일단 만들고 나면 앞으로 문서확보의 방침은 추후로 정해 나가도 되는 것이다.

그래도 개관식때 외부들에게 보일 것을 생각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기초는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나는 대로 내가 갖고있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 정리해 두었다. 하버드 로스쿨의 Treasure Room을 만드는 데에도 이 대학의 비일(Beale)교수가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나는 내 장서 중 이에 적합한 것은 아낌없이 내어 놓기로 결심하였다. 솔직히 이런 중요한 문서와 책들을 나혼자 늙어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앉아있어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연구실과 우리집 서재에서 찾아낸 것들이 100여 점이 넘게 상당수에 달했다. 나도 그리 꼼꼼한 수집가는 못되지만 역사적 관심이 있어 모아 두길 잘 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관하고 있던 것들로 몇 가지는 특별히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1984년 쯤이라 기억되는데, 당시 서울대 대학원장으로 계신 金曾漢교수께서 내 연구실로 무슨 두툼한 봉지를 갖고오시며, “이제 이걸 최교수에게 주고싶어 가져왔어” 하시는 것이었다. 내용인즉은, 1950년대부터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던 학생출석부인데, 어떤 것에는 출결석표시만이 아니라 중간시험, 기말시험 성적까지 적혀있다. 독일에서 돌아간 鄭鍾勗박사(1933-1982)에게서 받은 편지도 한

꾸러미로 묶여있다. 金교수께서는 정년퇴임을 얼마 앞두고 책상정리를 하시다 남기고 싶으신 것을 챙겨 갖고오신 것인데, 왜 나에게 그것을 전해주시는지 그때는 별로 깊이 생각을 못하고 반아서 내 캐비닛 속에 보관해 두었다.

또 1983,4년 어느날이라 생각되는데, 李興培변호사께서 法大에 오셔서 혹시 보관할 가치가 있으면 받아달라고 하시며, 1930, 31년 京城帝大 시절에 쓴 花村교수와 船田교수의 刑法, 로마法 노트를 주고 가셨다. 깨알 같은 日本語 글씨로 쓴 노트를 보고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감탄하면서, 이것도 내 캐비닛 속에 보관하였다.

1980년대 초에 관한 田鳳德변호사께서 우리집에 오셔서 사과박스같은 통 대여섯개의 문서를 주셨는데, 냄새나는 묵은 문서들과 잡지 등 섞여있었다. 이 문서들은 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의 역사에 관한 자료들인데, 「大韓辯護士協會史」를 집필하느라고 모은 것이니 이제 최교수에게 주고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셨다. 나는 솔직히 별 가치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십수년을 우리집 서재 속에서 박아두었다. 이번에 「귀중문서실」에 옮겨 내용을 검토해보니 귀한 자료들이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法の 날」 제정경위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서 발견되어 각 신문과 TV에서 열띤 취재를 해가 덩달아 귀중문서실이 크게 알려지게 되기도 하였다.

1987년에는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보스턴에서 故 鄭光鉉교수의 長男, 次男 두분을 만났더니 부친이 남긴 유품들을 法大에 기증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장 받아도 보관할만한 곳이 없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작년에 朴秉濠교수께서 보스턴에 가셨을 때도 또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한다. 이제 귀중문서실에 옮겨오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하여 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관심있는 분들의 호의로 보니 귀중문서실이랄까 한군데 모아 놓을 공간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군데 모으니 출발부터 결코 빈약하게 보일리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좀더 본격적으로 格式을 높이기 위해 菊山법학도서관에 건너가 회귀서, 특히 법관양성소 시절에 사용하던 「法國律例」등 교과서등과 「大典會通」등 古法典, 六法全書와 50년대에 나온 교과서 初刊本등을 영구대출의 형식으로

빌려왔다. 安京煥館長과 김완태 사서주임도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선뜻 응해주어서 고마웠다. 사실 도서관의 일반서가에 (대부분 複本으로) 잠자고 있던 것을 이제 유리진열장 속에 전시하니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法國律例」는 법관양성소시절에 이미 프랑스의 나폴레옹法典을 번역하여 프랑스法學을 가르친 物證인데, 내가 「韓國의 西洋法受容史」(박영사, 1981)와 「韓國法學史」(박영사, 1989)에서 서술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던 것을 이번에 완전히 빛을 보게 해주는 셈이다. 법관양성소의 갖 쓰고 도포입은 法學教授들의 모습과 당시 개화기의 교과서등도 각광을 받게 되었다. 참고로 법학도서관에서 영구대출해온 89권의 도서는 아래와 같다.

서 명	청 구 기 호	등 록 번 호	책 수
物 權 法	347.2 G418s	285855	1
革 命 憲 法	342.11 G154h2	307013	1
憲 法 解 義	342.11 Y92s2	15823	1
朝 鮮 警 察 法 研 究	343.31 T1396c	6552	1
朝 鮮 司 法 警 察 法 論	343.31 Uc4s	1664	1
國 有 財 產 關 係 法 令 集	343.3 H193g	359191	1
行 政 法 各 論	343.2 Y98s	3113	1
行 政 法 各 論	343.2 H92g c3	16148	1
在 朝 鮮 美 國 陸 軍 司 令 部 軍 政 廳 法 令 集	343.5 H193i	296298	1

서 명	청 구 기 호	등 록 번 호	책 수
朝鮮行政法概要	343 Uc4c2	14466	1
刑法總論	344.1 B146h c.2	6724	1
韓國刑法總論	344.1 Y9h	294255	1
朝鮮相續稅令講義	345.6 T1392c	1961	1
朝鮮登記法令集	345.72 J773e	358575	1
朝鮮不動產證明令義解	345.72 K128c	10349	1
朝鮮相續稅令	345.65 M934c	425711	1
朝鮮戶籍例則	345.71 C458c 1933	541267	1
戶籍法令集	345.71 H193h	291621	1
戶籍法典	345.71 H193y	325640	1
最新콘사이스法學辭典	340.03 C765	326145	1
法律經濟用語解說	340.03 G586b	309519	1
法學概論	340.02 G421s2	3538	1

서 명	청 구 기 호	등 록 번 호	책 수
法 學 通 論	340.02 G421ts	291383	1
在 官 法 形 錄	340.0952 C4203t v.1-v.2	306873-874	2
법 제 10 년 의 개 관	340.091 H193b	15661	1
實 定 法 價 值 論	340.1 J461g	379701	1
司 法 法 規 類 纂	347.08 Sa28s	5326	1
民 事 訴 訟 法 釋 義	347.2 B146m v.1-2	3569 285840	2
朝 鮮 報 達 吏 報 務 提 要	347.16 T787s	1679	1
國 家 再 建 非 常 措 置 法	342.11 H19b	1331	1
美 軍 政 法 令 總 覽	349.102 H193rE	13336	1
新 法 律	349.103 D13sh	359229	1
檢 察 局 誌	347.13 B45g	63140	1
朝 鮮 法 令 輯 覽	349.102 C458c v.1-2	4734-4735	2
大 唐 六 典	349.2 Y57df v. 1	2649	1

서 명	청 구 기 호	등 록 번 호	책 수
日 本 古 代 法 典	349.3 H123k	388270	1
六 法 全 書	349.102 H193m 1955	292374	1
現 行 法 令 總 集	349.102 H193hd v.1	285339	1
正 陽 六 法 全 書	349.102 H193j	305180	1
國 際 法 學 (上, 下)	341 Y56d v.1 c.5 v.2 c.6	419373 459150	2
法 哲 學 概 論	340.1 Y56b	2330	1
國 際 法 要 論	341 B148y2	285676	1
法 斗 文 化	340.1 Se67b v.1 - 3	2573	1
Die Rechtswissenschaft in Selbstdarstellungen	340.1 P693r	4593	1
萬 國 公 法 要 略	341 L373iCa C.4	242	1
大 典 會 通	349.102 D131f v.1 v.2,3,4,5 (c.4)	444901 444914 - 917	5

서 명	청 구 기 호	등 록 번 호	책 수
大 明 律 講 解	349.2 D131 v.1 - 3	444922 - 924	1
新 領 律 例	349.102 sa69	537	1
蘇 營 訴 題 錄	349.1037 H992s	285337	1
法 國 律 例 ; 刑 律	349.44 F844h v.2 c.3	472	1
法 國 律 例 刑 名 定 範	349.44 F848hj	483	1
法 國 律 例	349.44 F844hj v.1 c.2 v.2(1) c.2 v.2(2) v.2(3) c.2	474 476 479 481	4
法 國 律 例	349.44 F844m v.1(1) c.2 v.1(2) v.1(3) v.1(4) v.1(5) v.1(6) v.1(7) c.2 v.1(8) c.2 v.1(1) c.2 v.1(2) c.2 v.1(4) c.2 v.2(5) c.2 v.2(6) c.2 v.2(7) c.2 v.2(8) c.2 v.2(1) c.2	493 489 501 499 505 495 491 497 511 517 520 515 523 525 508 531	20

서 명	청 구 기 호	등 록 번 호	책 수
法 國 律 例	v.2(2) c.2	534	4
	v.2(4) c.2	528	
	v.2(5) c.2	530	
	v.2(6) c.2	529	
	349.44		
	F844mj		
	v.2 c.2	484	
	v.3	134	
	v.3 c.2	487	
	v.4 c.2	485	
합 계			89

또 나는 중앙도서관에 가서 선우중호 관장에게 취지를 말씀드리고, 개관식때 사용하도록 구관도서중 얼마를 대출해 달라고 했다. 장기 대출은 어렵지만, 열흘 정도는 가능하다고 승낙을 받고, 具注書 사서관의 도움을 받아 아래와 같은 97권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대로 당일날의 사정으로 이 책들은 전시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며칠 후 반환하였다. 奎章閣의 李相殷 관리실장에게도 얘기 했더니, 규장각 자료는 하루 대출 요청이 많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法大는 바로 이웃에 있으니, 필요하다면 아침에 대출해서 저녁에 반납하는 형식으로 행사가 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고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관식때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만 두었다. 어쨌든 앞으로 규장각과의 관계는 긴밀히 가져야 할 것이다. 중앙도서관에서 대출해 왔던 서적도 참고로 여기에 적어둔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저자 및 서명	책수
법 15681	설송	法規摘要	1
	340.06		
	B 45		
법 15016	설송	次養子侍養子資料	1
	345.6		
	J773cy		
법 16450	설송	法學會論集	1
	340.4		
	H678k v.15(3-4)		
법 15650	설송	法例鍊要	1
	340.4		
	B 45		
법 15555	설송	韓國婚姻關係其他論集	1
	349.1		
	AK 52e		
법 16439	설송	法大學術祭	1
	340.5		
	Se67bav.1/4		
16430	설송	駱山 第 3號	1
	378.05		
	Se67m 65/67		
15788	설송	韓國離婚研究	1
	345.624		
	Y64h		
15608	설송	民事慣習回答彙集	1
	345.01		
	C456m		
163133	5120	慣習調査 報告書	1
	48		
214411	5120	朝鮮 舊慣制度 調査事業概要	1
	55		
30357-30364	5130	刑案匯覽	8
	6		
	1-6,01-02		
30666-30675	5130	大明律集解附例	10
	22		
	1-10		

등록번호	청구기호	저자 및 서명	책수
30301-30303	5130	聽訟彙案	3
	30		
	1-3		
33074-33083	5130	大明會典	10
	35		
	1-10		
8771-8780	5130	皇朝通典	10
	46		
	1-10		
9011-90209020	5130	欽定續通典	10
	47		
	1-10		
184785	5305	京城土木談合事件 高等法院 判決書	1
	10		
209215	5305	朝鮮特殊犯罪 資料	5
	17		
	昭 8-昭 12		
155299	5306	刑事博物圖錄	1
	52		
	1		
144234	5370	批准說	1
	48		
144216-144217	5730	外國交際公法	2
	49		
	1-2		
45463	5380	朝鮮法律判例決議總攬	1
	9		
135795	5590	朝鮮統治新論	1
	86		
73323	5590	朝鮮統治策に関する學說	1
	92		
	1		
98720-98731	5720	通商條約章程成案彙編	12
	18		
	1-12		

등록번호	청구기호	저자 및 서명	책수
115312	L102	American jurisprudence.	1
	10		
	1		
127161	1120	Lex salica	1
	64		
48368	L220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1
	40		
10798	L302	Encyklopädie der Rechtswissenschaft.	1
	3		
	cop.2		
27114	L310	Der Zweck im Recht.	1
	126		
	1		
6323	L310	Richtigen Rechte.	1
	499		
95190	L305	Festgabe der Deutschen Juristen Zeitung.	1
	29		
112228	L305	Zum 90. Geburtstage und 25 jährigen Regierungsjubiläum	1
	81		

V

이렇게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개관식 행사를 치루고, 일단 성공의 한숨을 돌리고 그 다음 해야할 일은 정식으로 진열대와 책장을 맞추어 넣는 일이었다. 끝까지 속을 썩힌 S회사 사장 부사장을 불러 취소시키고, 다른 V회사에게 진열대 제작을 새로 의뢰하였다. 하는 김에 좀더 잘 하려고 법대도서관의 김원태氏, 규장각의 이상은씨의 자문을 얻어 진열대의 폭을 넓히고 스텐으로 받침대를 한 것으로 바꾸었다. V회사에게는 단단히 지시하였더니 제 때에 납품을 해 왔는데, 물품도 마음에 들었다. 빨간 카펫에, 파란 진열장, 하얗게 빛나는 받침대의 색깔로 환하게 돋보인다. 정식으로 다 갖추고 속에다 다시 두 줄로 새로 진열을 하

니 훨씬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풍부해 보인다. 나는 이것을 신문에 조금은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FAX로 동아, 조선, 한국 등 몇 군데 문화부장 앞으로 보냈다. 제일 먼저 「경향신문」 4월 24일자에 「서울대 법대 귀중문서실 마련」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기사가 실렸다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1백년동안의 법학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들이 보관, 전시되는 「귀중문서실」이 국내최초로 서울대 법대에 마련돼 지난달 20일 문을 열었다. 서울대 법학연구원 3층에 자리잡은 이 귀중문서실은 흔히 개인소유로 남아있거나, 사장되기 쉬운 역사적 자료들을 모아 국내 법학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는 1895년 최초로 문을 연 법관양성소시설의 출석부, 졸업장, 교과서에서부터 경성제국대학과 현재의 서울대법대에 이르기까지 1세기에 걸친 법대의 각종 행정문서및 교육관련자료, 사진집들이 20평남짓한 공간에 가지런히 선보이고 있다. 프랑스 나폴레옹법전을 한문으로 옮겨 구한말의 교과서로 사용한 「法國律例」, 갓을 쓴 법관양성소 교수의 사진, 학생들이 써놓은 강의노트와 리포트 많은 학생들의 생활모습을 반영해주는 구한말·일제시대의 출석부와 졸업장, 시험문제등. 이 자료들을 넘기다보면 법관양성소 1회 졸업생으로 국제법에 뛰어났던 李儒열사의 졸업성적등 흥미로운 자료들을 속속 접할수 있다. 사진·교과서·출석부등 이곳의 자료들은 그동안 학교도서관과 행정실, 교수·동창들이 개별적으로 소장해오던 것. 최근 개장소식이 퍼져 나가면서 자료를 기증·대여하겠다는 동창들의 연락이 잇따르고 있다.

이중 특히 눈길을 끄는것은 미국에 사는 故 鄭光鉉법대교수의 아들이 부친의 유품을 모아 기증키로한 애국가에 대한 자료 이 자료는 鄭교수의 장인인 독립운동가 尹致昊선생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애국가의 작사과정에 대해 그동안 밝혀지지않은 기록들도 포함돼 있다. 법대 崔鍾庫교수는 『외국의 대학에서 보편화돼 있는 귀중문서실은 교육환경의 변화과정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산 교육장」이 될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대학과 학문분야에서도 도서관과 달

리 각종 역사적 자료들을 수집 선보이는 귀중문서실의 설치가 늘어날것 같다」고 전망했다. <李琪洙기자>

「동아일보」에는 5월 11일자로 「국내법대 최초로 귀중문서실 설치」라는 제목으로 신연수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갔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이다.

서울대법대 법학 연국관에 국내 법대로서는 처음으로 귀중문서실이 설치됐다. 서울대 법대가 오는 95년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만든 이 문서실에는 지난 1895년 법관양성소시절부터 지금까지 법률가양성 및 법전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서 3백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여기에 전시된 문서에는 법관양성소 교수이자 한국최초의 변호사였던 洪在祺교관에 대한 왕의 칙령과 1930년 경성제국대학시정 李興培변호사의 강의노트등 서울법대의 1백년사를 보여주는 문서들이 포함돼 있다. 법대 교무담당학장보인 崔鍾庫교수(법학사)는 『당시 문서들로 보아 법관양성소에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法國律例」를 교과서로 사용하는 등 국내외법에 대한 매우 심도있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선 成宗 때 완성된 「經國大典」, 대원군시절의 「大典通編」및 「大典會通」및 「六法全書」등 우리나라의 법전발달사를 보여주는 문서들과 개화기이후 법학 수준을 보여주는 兪星濬의 「법학통론」(1907), 兪鎮午의 「헌법해의」(1949), 金曾漢의 「민법총칙」(1958)등 초간본들도 수집돼 있다. 서울대법대측은 법관양성소시절의 石鎮衡, 李冕宇, 劉文煥, 丁明燮, 張憲植등 개화기 법률가 지식인 1백여명의 행적과 후손들을 확인, 자료수집과 좌담회개최를 통해 한국근대 법학의 궤적을 복원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崔鍾庫교수는 『雪松 鄭光鉉, 晴軒 金曾漢교수등 한국법학의 개척자 격인 인물들의 저술 사진 유품등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개인별 파일도 만들 예정』이라며 『개교 1백주년을 맞아 이 문서실을 개관함으로써 각 계에 나가 있는 동창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법학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법대측은 계속해서 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한국법학

「1백년사」발간과 함께 귀중문서실의 소장자료목록집과 圖錄을 발행하고 규장각등의 도움을 받아 역대법전전시회, 법학교과서전시회, 법학자사진전시회등 역사성있는 행사들을 벌일 계획이다.

「동아일보」의 기사에는 내가 진열대에 서서 자료를 보며 서있는 모습의 사진이 크게 실렸는데, 마침 그 날 법학연구소 주최 친목등산대회가 있어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날이라 사진에는 늙스그레한 司書같이 보인다.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엔 몰라봤다면서 전화를 해 온 친구들도 몇 있었는데, 나도 이 사진의 모습이 내가 20년 후 퇴직할 때까지 이 방에서 움직일 내 모습과 비슷하다고 속웃음을 지었다. 어쨌든 신문보도의 위력은 역시 대단해 여기저기에서 반응과 문의전화 가 왔다.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귀중문서실 자체보다 먼저 이곳의 문서가 클로즈업 된 것은 여기에 있는 「法の 날」제정 경위에 관한 문서 때문이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법의 날」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될 1961년 대한변협에서는 5월 1일이 아닌 9월 27일, 즉 조선조 經國大典(1469년)이 반포된 날로 하자고 건의했던 것이다. 내가 이 문서를 근거로 주장을 했더니 각 신문사와 TV에서 경쟁취재를 해서 5월 1일자에 보도되었다. 「동아일보」 5월 1일자에는 내가 「法の 날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時論을 썼는데, 이에 대해 법무장관 이하 법무부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각계에서 반응이 있었다. 귀중문서실의 자료덕분을 톡톡히 본 것이다.

이처럼, 요란한(?) 보도와 함께 귀중문서실이 오픈되었는데, 당장 두가지 뜻있는 사건이 연결되었다.

첫째는 미국 샌디에고에 계신 劉基天 前서울대총장께서 2월 26일 작고하신 부인 헬렌 실빙(Helen Silving)박사의 유품을 기증해 주시겠다는 뜻을 전해오신 것이다. 물론 그것도 사모님의 작고에 애도를 표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法大에서 추모회를 개최할 터이니 사모님의 유품을 좀 기증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유박사께서는 귀국하시자마자 바로 실빙여사의 사진과 저서들을 갖고오서

서 기증해주셨고, 5월 7일에 다시 날짜를 잡아 「헬렌실빙박사 추모회」를 가졌다. 김찬진변호사의 추모사와 함께 유박사님의 회고담이 있었고, 이태희, 남홍우, 서돈각, 이항녕, 이태영, 노영빈, 안이준, 그리고 배재식, 김철수 등 50여분의 참석자들이 추모좌담을 하였다. 유박사께서도 매우 호뜻해하셨고, 저녁식사는 김찬진변호사의 비용부담으로 호암생활관에서 정식플코스를 들었다. 귀중문서실로서 최초의 행사를 치른 셈이다.

둘째는 법관양성소 교관을 지내고 변호사 제1호인 洪在祺(1873-1950)의 손자가 祖父의 敎官任命狀 및 각종 勅命등의 자료를 직접 기증해온 일이다. 홍재기의 손자 洪淳吉은 서울法大를 졸업하고 대우실업 인사부장으로 있는 분인데, 위의 자료와 함께 부친 洪鍾敏(1911-1991)변호사의 자서전 「역사의 수레바퀴속에서」(역사편찬회, 1992) 50권을 기증해주셨다. 홍재기는 개화기에 최초로 미국에 법학을 공부하러 유학한 법조선각자인데, 귀중문서실이 그분의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기꺼이 이런 귀한 자료를 기증해 준 첫 케이스로 매우 고맙고 뜻깊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기회를 보아 홍재기 一家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여 더욱 뜻을 기리고자 계획하고 있다.

VI

앞으로 귀중문서실을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문서실, 한편으로 도서관, 그리고 한편으로 박물관과도 같은 다소 복합적인 성격의 이 공간을 어설프게 운영한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던 터에 朴秉濠교수의 主催로 한 달에 한번씩 개최되는 「法史研究와 資料」集談會를 5월 26일에 귀중문서실에서 개최하여 나에게 「韓國近代法史資料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달라는 의뢰가 왔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기꺼이 응하여, 귀중문서실에서 몇 분의 교수와 외부인사(법제연구원의 李鍾日박사)를 모시고 집담회를 가졌다. 아래는 그 때 발표한 간단한 발표요지이다.

서론

- 法史 1. 法律史(立法史)
2. 法制度史
3. 法學史
4. 法思想史
- 한국近代法史의 意義: 開港(1876)~合邦(1910)

I. 近代法律史(立法史) 資料

韓末法令集
奏本(議)
法部來去案

II. 近代法制度史(棧閱史) 資料

法院史
檢察史
辯護士史

III. 近代法學史 資料

法學教育機關
法官養成所
普成專門學校
法學理論
開化期 法學教科書: 約 35種

IV. 近代法思想史 資料

衛正斥邪派의 法思想: 李恒老, 柳麟錫, 李寅梓 等 文集
西洋法思想의 受容: 兪吉濬, 李儁, 兪致衡, 徐載弼 等 文集

결 론

서울法大 貴重文書室의 位相

사실 이러한 近大法史 資料들을 귀중문서실에 다 모을 수는 없고, 법관양성소 이후 법학교육 1세기를 중심으로 착실한 수집과 보관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다. 이 문서실의 개설을 보고 자극이 되어서인지는 모르나, 法院에서도 서초동으로 大法院이 옮기면 法史資料室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제 한국도 문서와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증거라 하겠다. 그런데, 문서만 모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역사화 하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 이 문서실에 기증하는 자와 기증문서의 목록집은 물론 이 문서실을 소개하는 안내 팸플렛이나 소책자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임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圖錄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한 권씩 배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좌담회 같은 것을 열어 관련자들의 증언을 녹음에 담아두고, 이러한 결과를 간단한 책자로 출간하는 일도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법관양성소 이후 서울법대를 졸업한 모든 동창들의 이력 (Bio-Data)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자료로 활용해나가는 일도 해야할 것이다. 또 法學教育史는 물론 法史에 관련된 신문, 잡지 기사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자면 사실 이를 전담하는 연구자나 人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이 문서실도 공간확보와 전시대, 진열장 등을 들여놓는 외에는 학교측에서부터 보장 받은 것은 없다. 자료를 구입한다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도 없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 것이다. 정 돈이 없어 할 수 없다면 동창회나 독지가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오히려 당장 아쉬운 것은 이런 빛안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알뜰하게 매만져 줄 사람의 손길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역사를 다져나간다는 신념과 보람으로 해 나가면 더욱 알차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VII

5월 24일, 도서출판 玄岩社로부터 전화가 와서, 玄岩 趙相元회장이 동아일보에 난 귀중문서실 기사를 보고 감동하여 직접 와 보시겠다는 것이다. 8순이 넘는 趙회장께서 지팡이를 짚고 비서를 데리고 오셔서 장시간 귀중문서실의 자료를 보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설치경위를 들으시더니, 내 손을 꼭 잡으시며, “역사란 원래 한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거요!” 하시며 격려해주셨다. 앞으로 현암사에서 낸 초판본 法典등 자료를 기증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가시더니, 얼마후 19종의 법전 초간본들에 일일이 정성스런 解題까지 붙여서 기증해 오셨다. 정말 뜻밖에 귀한 자료를 얻게 되어 전시대에 진열하고, 감사패를 하나 만들어 드렸다.

얼마 후 7월 2일에는 미국의 듀크(Duke)대학의 법대학장인 갠(Paula Gann)학과 동대학 모리스(Morris)교수 일행이 법대를 방문하여 귀중문서실을 관람하였다. 서양 학자로서는 첫 방문자 인데, 아직까지 외국인을 위한 영문캡션 설명문을 붙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해 주어야 했다. 실빙(Silving) 박사의 기증과 「美軍政府의 법률 의견서」(Legal Opinions of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자료에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였다. 이 문서실에 대하여 매우 인상깊게 느낀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외국인에게도 좋게 비치지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처럼 계속 관람자들이 오는데 20평밖에 안되는 공간으로 처음부터 너무 좁게 설계된 것이 아쉽지만, 우선 주어진 이 문서실을 더욱 알차게 가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여기서는 이 문서실의 설치 경위와 초창기의 몇 사실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해 두고자 이것저것 적어보았다. 먼먼 훗날 이 글을 읽는 사람, 특히 法大의 후배교수로서 이 문서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서는 이 글이 다소 참고가 될 것이라 믿는다.